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668 발의연월일: 2023. 8. 7.

발 의 자:지성호·김성원·김형동

유상범 • 이인선 • 김용판

최춘식 · 김희곤 · 박대수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,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소득이 전무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, 보호대상 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제1항·제2항 및 제6항 신설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의 제목 "(국민연금에 대한 특례)"를 "(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"제1항"을 "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기간 중 「국민연금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아닌 보호대상자가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② 통일부장관은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한 보호대 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보호대 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의2(국민연금에 대한 특례)	제26조의2(국민연금 가입 지원		
<u><신 설></u>	등) ①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		
	정보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정		
	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기간		
	중 「국민연금법」 제8조에 따		
	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같은 법		
	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아		
	<u>닌</u> 보호대상자가 「국민연금		
	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		
	한다.② 통일부장관은 「국민연금 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 한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		
<u><신 설></u>			
	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88조		
	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부담하		
	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		
	를 지원할 수 있다.		
<u>①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		
<u>②</u>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	<u>④</u> <u>제3항</u>		
금액은 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			
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			
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			

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 다 만,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은 1 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 다)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. ③ (생 략) <신 설>

<u>(5)</u>	(현행	제3항고	· 구 같음)	
<u> </u>				ו או בו או

⑥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